

2-2 학사 운영 규정 I

[규정 제목 개정 2015.2.19.]

1990. 3. 1. 제정

2015.12.24. 개정

주무부서 : 교무처 학사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앙대학교 학칙」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학칙시행의 규정에 있어 학사과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학기 등록

제2조(등록) ① 등록이란 다음 학기에 학업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며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면 된다.

② 학생은 매 학기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를 완료함으로써 등록 인정되며 장학생과 기타 학비감면을 받는 학생도 등록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③ 학생은 8학기 이상(계절학기 제외) 등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10학기 이상, 의학부 12학기 이상 등록 하여야 하며 조기졸업자 및 학·석사학위연계전공자는 예외로 한다.

④ 다음 각 호1에 해당하는 사유로 학적이 변동되었을 때는 변동된 학과(부) 및 학년의 등록금을 적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복학하였을 때
2. 재입학하였을 때
3. 전과(부)하였을 때
4. 유급하였을 때

제3조(징수금액) 등록금은 학교의 실정에 따라 총장이 정한다.

제4조(징수방법) ① 정규학기 등록금은 학기별로 징수한다.

② 입학금은 학생이 입학 및 재입학 시에 전액 징수한다.

③ 학기 개시 전 및 휴학 기간 내에 휴학하는 자에 대하여는 등록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④ 계절학기, 학점등록, 수업연한 초과자 및 시간제등록생의 등록금은 신청학점별로 징수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학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징수기간) 등록금의 징수기간은 해당학기 개시 전 60일 이내에서 그 징수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분할납부) 등록금의 분할납부는 신청자 중 총장이 허가한 자에 한해 가능하며 이에 관한 사항은 분할납부지침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등록금의 면제·감액) 다음의 각호에 따라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와 장학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3. 휴학자에 대하여는 휴학기간중의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면제한다.
4.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은 결석으로 인하여 면제 또는 감액되지 않는다.

제8조(휴학자 등록금) 정해진 등록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복학하는 해당학기의 등록금으로 이월된다.

1.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 휴학 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2. 학기 중 입영으로 성적 평가를 받을 수 없어 군입대 휴학원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제9조(재입학금의 납부)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의 등록금 이외에 재입학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금 납부 후 휴학한 자중 복학기간 만료로 제적되어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등록금을 대체 인정하며 재입학금만 부과된다.

제10조(등록금의 반환)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정 제11조 등록금 반환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의하여 입학(신입학·재입학·편입학 포함)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다만 휴학 후 자퇴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금 납부 학기의 최종 학적 변동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09.01.>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
- ② 결석 또는 징계처벌에 의한 기간은 등록금의 반환 또는 감면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 ③ 한 학기 기본수강 신청학점 범위를 미달하여 수강신청을 한 경우와 수강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금 등의 반환을 하지 않는다.

제11조(등록금 반환기준) ① 해당 학기 개시일(입학생의 경우 입학일) 전일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등록금을 전액 반환한다.

② 해당 학기 개시일 이후에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학기개시일 전일까지	등록금 전액
2. 학기개시일 ~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3. 학기개시일 30일 다음일 ~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4. 학기개시일 60일 다음일 ~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5. 학기개시일 90일 다음일 ~	반환하지 않음

제12조(수업연한 초과자등록) 수업연한을 초과한 자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수강학점이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2. 수강학점이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3. 수강학점이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4. 수강학점이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제13조(학점 등록)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의 의무를 면제하고 이 규정 전 조에 의한 학점 단위로 환산하여 납부케 할 수 있다.

1. 총 7학기 이수 후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 평점이 4.00 이상인 자
2. 총 8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3. 건축학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 총 9학기를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하고 전체성적 열람용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4. 건축학 및 건축설계전공 재학생으로서 총 10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5. 약학대학 재학생으로서 유급에 의해 다음 학기에 수강해야 하는 학점이 9학점 이내인 자
6. 의과대학 의학부 예과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총 4학기를 이수하였으나 의학부 진급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7.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과정의 재학생으로서 성적 평균이 70점 이상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8. 간호학과 재학생으로서 성적 평균이 1학년은 60점 이상, 2,3,4학년은 70점 이상이면서 과목낙제의 학점수가 9학점 이내인 자
9. 2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4학기 이상 이수하였으나 졸업에 필요한 학점이 9학점 이내로 부족한 자. 다만, 건축학전공의 2학년 편입학생은 8학기 이상 3학년 편입학생은 6학기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10. 학점등록 대상자의 봉사활동, 산학협동인턴십수업 등은 학점등록 대체를 허가하지 않

는다.

11. 학점등록 허가자는 휴학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학칙 제2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학점등록을 취소하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한다.
12.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학점등록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3장 수강신청

제14조(학번) 학번은 학생 개개인에게 부여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수강신청, 시험 답안지 작성, 등록금 납부 등 학교생활 전반에 걸친 사항이 모두 이 학번에 의하여 컴퓨터로 처리되며, 입학 후 부여한 학번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하지 않는다.

학번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2008	0301
입학연도	일련번호

제15조(수강신청) ① 수강신청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 ② 수강신청은 학과(부) 지도교수의 수강지도를 받아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기간 내에 전산입력을 하여야 한다.
- ③ 동일 교과목을 중복하여 수강신청을 할 수 없으며, 중복 취득한 학점은 졸업인정학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 ④ 타 학과의 전공과목은 선택이수 할 수 있다. 다만, 타 학과의 상급학년에 배정된 과목으로 선수과목의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선수과목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수강신청 학점 수가 16학점 이상인 자로서 낙제과목이 없는 자를 성적우수장학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졸업직전학기의 경우는 13학점 이상을 적용하며, 장학금에 관한 내용은 장학금지급에 관한 시행세칙에 따른다. <개정 2015.10.7.>
- ⑥ 수강신청 미필자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중간시험과 학기말시험에 응시하였어도 해당학기 성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16조(수강신청 학점 수) ① 1학년 2학기부터 직전학기의 기본 수강신청 학점이 15학점 이상 되어야 하며, 그 성적평점에 따른 수강신청 가능학점 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다만, 약학부, 의학부, 간호학과는 직전학기의 성적평점에 관계없이 기본 수강신청 학점 내에서만 수강신청을 할 수 있다.

1.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00 이상인 자 중 졸업학점이 140~160학점 이상인 대학의 수강신청은 23학점으로 한다.
2.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00 미만인 자 중 졸업학점이 140~160학점 이상인 대학의 수강신청은 20학점으로 한다.
3.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00 이상인 자 중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대학의 수강신청은 22학점으로 한다.
4.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00 미만인 자 중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대학의 수강신청은 19

학점으로 한다.

② 삭제

③ 약학부, 의학부 및 간호학과의 기본수강학점은 교과과정에 준한다. <개정 2011.3.1, 2012.3.1>

④ 매 학기 반드시 15학점, 4학년은 8학점 이상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급에 따른 학점보충 및 학점등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⑤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중 교직과정 이수자가 타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복수전공하는 경우에는 수강신청 학점을 20학점으로 한다.

제17조(수강신청 학점 이월제) ① 2008학년도부터 학기별 수강 신청 가능학점수를 연간 단위로 계산하여 수강 신청할 수 있으며, 연간 단위는 1학기의 기본수강 신청학점의 잔여학점을 2학기 기본수강 신청학점에 추가로 수강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학기 기본수강 신청학점의 잔여학점은 다음해 1학기에 추가로 신청할 수 없다.

② 당해 연도 1학기 및 2학기 수강신청 학점 수는 졸업학점이 140학점 이상인 대학의 연간 단위 수강신청의 경우 40학점으로 한다.

③ 당해 연도 1학기 및 2학기 수강신청 학점 수는 졸업학점이 132학점인 대학의 연간단위 수강신청의 경우 38학점으로 한다.

④ 수강과목 취소기간 내에 취소한 과목의 학점 수는 연간 수강신청 학점에 포함한다.

⑤ 직전학기 성적평점이 4.00이상인 자의 초과수강 3학점 및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연간 단위 수강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⑥ 사범대학 및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중 교직과정 이수자와 타 학과에서 교직과정을 복수전공하는 자의 연간단위 수강신청은 40학점으로 한다.

제18조(수강신청 정정) ① 수강신청 정정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학생 본인이 수강신청시스템에 접속하여 정정할 과목을 선택하여 정정한다.

③ 수강신청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신청정정을 해야 한다.

1. 본인이 신청한 수강과목과 상이한 경우

2. 수강과목이 합반, 분반, 폐강되는 경우

3. 성적평점에 의해 수강신청 가능학점이 변경된 경우

④ 수강신청 정정 시 교과목강좌별 수강인원을 제한하는 강좌는 여석이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허용된다.

⑤ 수강신청 정정의 기회를 놓쳐 과목낙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에 따른 성적 정정은 일절 허용하지 않는다.

⑥ 이 규정 제3장 수강신청규정을 위반한 수강신청의 경우에는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서 임의로 정정을 할 수 있다.

⑦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등록자는 수강과목을 정정할 수 없다.

제19조(수강과목의 취소) ① 수강과목의 취소는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② 수강과목 취소 후 학점수가 12학점 이상, 4학년은 8학점 이상이어야 한다.

③ 취소할 과목을 삭제하고 최종확인을 반드시 선택하여 클릭한다.

④ 학점등록자 및 시간제등록자는 수강과목을 취소할 수 없다.

제20조(재수강) ① 재수강은 과거에 이수했던 과목의 성적과 재수강하여 취득한 성적을 비교하여 높은 성적을 학점으로 인정한다. 다만, 성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과거에 이수했던 성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5.5.28.>

② 재수강은 성적이 C+이하인 교과목을 과목별 1회에 한하여 기본신청학점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③ 계절학기 개설과목도 재수강을 할 수 있다.

④ 재수강한 과목의 학점 중 낮은 성적은 졸업학점 계산 시 전체 취득학점에서 제외하며 성적증명서에 표기하지 않는다. 다만, 학적부에는 과거 이수했던 과목과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이 남는다.<개정 2015.5.28.>

⑤ 2010학년도부터 재수강한 과목 성적은 최고 A학점까지로 제한한다. 다만, 2015학번부터는 최고 B+학점까지로 제한한다.<개정 2015.5.28.>

⑥ 2015학번부터는 재수강하여 새로 취득한 성적이 높은 경우 성적증명서의 해당 교과목에 'R' (Retake)로 표기한다.<신설 2015.5.28.>

제21조(교과목 폐강) ① 교과목 폐강은 수강신청자가 전공과목(이론)은 20명 미만, 전공과목(실험·실습·실기)은 15명 미만일 경우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교양과목은 따로 정한다. <개정 2011.6.1, 2012.3.1>

② 학과(부), 전공 모집정원이 50명이하인 학과(부), 전공의 전공과목은 재학인원의 30%미만일 경우는 개설하지 않으며, 최소 인원은 10명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6.1>

③ 원어강의(영어강의A)는 수강신청자가 5명 미만일 경우, 영어강의B는 수강신청자가 10명 미만일 경우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설학년의 재학생 수가 200명 이상인 학과의 영어강의B는 수강신청자가 20명 미만일 경우 개설하지 않는다. <개정 2013.12.13>

④ 교직이론 및 교직소양 과목은 20명 미만, 교직전공 과목은 10명 미만일 경우 개설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직전공은 매 학기 개설할 경우 폐강할 수 있다. <개정 2012.3.1>

⑤ 졸업과 자격증 취득에 문제가 있는 학생이 교직전공 과목을 수강할 경우 예외로 한다. <개정 2010.11.1, 2012.3.1>

제4장 학점교류 및 인정

제22조(서울, 안성캠퍼스 학점교류) ① 재학생들이 소속캠퍼스에서 개설되지 않는 교과목을 타 캠퍼스에서도 이수 할 수 있다.

② 교류 이수할 수 있는 학점은 2,3학년은 학기별 3학점, 4학년은 학기별 6학점 이내로 하며, 재학기간 중 총 24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③ 재택강의 과목으로 개설되는 교양교과목은 학년, 학점 제한 및 캠퍼스의 구분 없이 수강이 가능하다.

④ 교류이수를 허용할 수 있는 교과목은 소속 캠퍼스에 개설되지 않는 과목으로써 자유선택과목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양교과목은 재택수업을 제외하고는 이수할 수 없다.

1. 통합 관련된 학과간의 교류이수 과목은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삭제 2011.6.1.>

⑤ 복수전공, 부전공, 연계전공, 학생설계전공 및 지식경영학부 재학생은 캠퍼스 간 학점 교류 이수학점 24학점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3.1>

제23조(대학원 학점 선이수제) 학부학생 중 대학원 진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 대학원 교과목을 선이수 할 수 있다.

1. 6차 학기를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3.30이상인 자는 신청할 수 있다.

2. 선 이수 학점은 한 학기에 3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총 6학점까지 이수할 수 있다.

3. 선 이수 학점은 학사학위과정 졸업학점 또는 대학원 입학 후 수료학점에 포함할 수 있다.

4. 대학원 학점을 선이수 하고자 하는 자는 소속 학과(부)의 학과(부)장 및 해당과목 담당 교수의 승인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24조(신입생 학점 선이수제) ① 신입학생의 경우 입학하기 전에 이수한 과목을 4학점 이내로 인정한다.

② 고등학교 재학 중 한국대학교육협회가 주관한 협약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학점으로 인정하며, 5년 이내 본 대학교에 입학한 경우 입학년도에만 인정한다.

③ 입학 전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처리는 P(Pass), F(Fail)로 하여 전체 졸업학점에는 포함하나 평점에는 산입하지 않으며, 교과목명은 별도로 정한다.

제25조(군복무중 학점인정) ① 병역법 제73조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자가 방송·통신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입영 또는 복무로 휴학 중인 자의 원격수업은 본 대학교 수업만 수강되며, 취득학점은 학기당 6학점 이하, 연간 12학점 이하로 인정한다.<개정 2015.5.28.>

③ 성적처리는 계절학기로 한다.

제26조(학점의 인정) ① 본 대학교 재학생이 국내·외 다른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이나 휴학자가 군복무 중에 취득한 학점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장 수업

제27조(수업) ① 수업은 주간, 야간, 계절, 재택 및 현장실습수업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할 수 있다.

② 실험 및 실습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속강의를 할 수 없다.

제28조(수업시간) 수업시간은 50분 또는 75분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계절학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수업시간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9조(수업연한) ① 수업연한이란 학생이 졸업 또는 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등록하고 수업을 들어야 하는 기간을 말한다.

② 각 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으로 하고,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 5년(10학기), 의과대학 의학부는 6년(12학기)으로 하고 그 교육과정은 예과 2년, 의학부 4년으로 한다.

③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졸업을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취득학점 수에 따라 학칙 제59조(학년수료)에 의한 수료인정을 받는다.<개정 2015.5.28.>

④ 약학부, 의학부 및 간호학과를 제외한 각 대학의 열람용 성적에서 전 학년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에 대해서는 수업연한을 7학기,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9학기로 단축할 수 있다.

⑤ 학·석사학위연계과정의 수업연한은 5년(10학기), 건축학전공은 6년(12학기)으로 하며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 중 각 대학은 7학기,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학부과정을 단축하여 졸업할 수 있으며, 대학원의 학·석사학위연계과정규정에 따른다.

⑥ 의학부 외의 모든 대학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2학년 편입학자는 3년(6학기), 3학년 편입학자는 2년(4학기) 이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2학년 편입학생의 수업연한은 4년(8학기), 3학년 편입학생은 3년(6학기) 이상으로 한다.

⑦ 2011학년도부터 약학대학의 수업연한은 6년(12학기)으로 하며, 그 교육과정은 다른 학과 또는 학부 등에서 이수하는 기초소양교육 2년, 전공교육 4년으로 한다.

제30조(학년도·학기) ① 학년도는 3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학년도는 2개 학기로 나누며 제1학기는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제2학기는 9월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2주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기개시일 전에 개강할 수 있다.

제31조(수업일수) ① 수업일수는 매 학기 15주 이상 매 학년 30주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법정공휴일 및 임시공휴일로 인하여 학기당 수업일수가 15주 미만일 경우에는 반드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9.3.1>

제32조(휴업일) <삭제 2009.3.1>

제33조(과목당학점) 과목당 개설학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이론 강의는 학기당 15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운영한다.
2. 실험, 실습, 실기, 연습과목은 30시간 이상을 1학점으로 운영한다.

제34조(출석인정제) ① 출석인정사유로 수업에 결석한 경우, 다음 표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출석인정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담당교수에게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

호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1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일요일,공휴일 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2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 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3	본인입원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 (2주 이내 인정, 학기별 1회만 인정) <개정 2015.12.24>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4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대학교 해당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5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2주 이내 인정) <개정 2015.12.24>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6	여학생 생리 공결제	매월1회(학기별 4회 제한)	신청서 및 담당교수 확인
7	예비군훈련	훈련기간	훈련통지서 및 교육훈련 참석 확인서
8	사범대학, 교육과정설치학과 등의 교육실습 및 교과목에 의한 현장실습	교육실습 및 현장실습기간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서 발행한 확인서

② 출석인정신청은 담당교수에게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학기말고사 이전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③ 시험기간은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여학생 생리공결제 및 예비군훈련으로 인한 결석은 시험기간에는 인정하지 않는다.

제6장 시험 및 성적평가

제35조(시험) ① 모든 교과목은 매 학기 중간, 기말시험을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정기시험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수시, 임시 및 재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험방법은 필기에 의한다. 다만, 담당교수의 의견에 따라 논문구술 또는 기타방법에 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6조(과제) 과제는 학기도중에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제37조(출석) 교과목별 총 수업시간수의 4분의 3이상 출석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성적종합평가) ① 모든 교과목의 성적은 각 교과목의 출석, 과제, 중간, 기말 및 임시(수시)시험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다만, 실험, 실습, 실기, 연습 및 기타 특수과목의 성

적평가방법은 따로 정할 수 있다.

- ② 출석점수의 부과는 10%이내에서만 가능하며, 출석인정사유 신청에 의한 결석은 결석일수에서 제외한다.
- ③ 모든 단과대학 시험에서 급제는 60점 이상, 낙제는 60점미만으로 처리되며 낙제과목은 성적증명서에 ‘ / ’ 로 기록한다.<개정 2015.5.28.>
- ④ 2015학번부터는 취득 점수가 60점 미만인 교과목은 성적증명서에 F로 표기한다.<신설 2015.5.28.>

제39조(학업성적평가) ① 학업성적평가는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Pass/Fail로 평가할 수 있다.

- ② 상대평가의 배분비율은 A이상 35%이내, B이상 누계 70% 이내, D+이하 5% 이상 부여를 원칙으로 한다.(A유형)
-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과목의 배분비율은 A이상 50% 이내, B이상 누계 90%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B유형)
 1. 원어(영어) 강의 및 교양 「English 1」, 「English 2」 과목
 2. <삭제 2009.3.1>
 3. 교직과정 과목
 4. 군사학 과목
 5. <삭제 2009.3.1>
 6. 실험, 실습, 실기, 연습과목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7. <삭제 2009.3.1>
- ④ 교과목 특성상 상대평가가 불가하다고 교무처장이 인정한 경우는 배분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A이상은 50%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⑤ 외국인 학생 및 대학원생 중 선수과목이수자, 군복무 중 교양 e-learning 수강자는 비율에 상관없이 평가한다.<개정 2015.5.28.>
- ⑥ 성적은 10등급으로 표시하여 학적부에 기록한다. 등급에 따른 평점과 이 평점에 의하여 전 체 취득성적 평균점수를 산출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경우의 산출 공식과 환산 점수는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09.12.21>

[성적등급표]

등급	취득점수	등급	취득점수
A ⁺	95점이상	C	74-70점
A	94-90점	D ⁺	69-65점
B ⁺	89-85점	D	64-60점
B	84-80점	P	PASS
C ⁺	79-75점	F	60점미만

[성적환산표]

[환산점수산출공식 : $60 + \{(\text{평균평점} - 1) \times 40 / 3.5\}$ = 환산점수]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점	100점 만점 환산점수	평점	100점 만점 환산점수
4.50	100점	2.50	77.14점
4.00	94.29점	2.00	71.43점
3.50	88.57점	1.50	65.71점
3.00	82.86점	1.00	60.00점

제40조(평균평점)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은 각 과목의 해당학점에 과목별 성적평점을 곱하여 나온 값을 총합계하여 총 신청학점으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 셋째 자리에서 절삭하며 그 평균평점으로 학사관리에 사용한다. 다만,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경우에는 총 취득학점수로 평균평점을 산출할 수 있다.

$$[(\text{교과목별평점} \times \text{학점})\text{의 총합계}] \div \text{수강신청학점(취득학점)}$$

제41조(성적열람 및 이의신청) ① 매 학기 학생의 성적열람은 학기말 시험 후 학사일정에 정해진 성적조회 기간 내에 본인이 직접 열람한다.

② 성적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성적조회기간 경과 후 성적정정기간까지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③ 성적증명서의 성적 기재내용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보관용 성적표를 제시하고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42조(성적정정) ① 담당교수는 학생의 이의신청을 접수한 즉시 출석, 과제물, 시험답안지 및 기타 성적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재검토하여 다음 정정인정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면 성적정정 기간 내에 담당교수가 직접 전산 입력하여 정정할 수 있으며, 성적정정기간이 경과 후에는 일체의 성적을 정정할 수 없다.

1. 답안지 채점상의 착오
2. 성적정리 상의 착오나 누락
3. 성적 전산입력상의 착오
4. 기타 자료제출에 의하여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

② 성적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전산 입력된 성적은 일절 정정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의 성적정정 인정사유 중 담당교수의 과오로 인한 사유발생시 교과목 담당교수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고 교학 부총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수강신청 실수와 채점표 말미기재 등으로 인한 성적정정은 일절 허가하지 않는다.

제43조(중간시험 후 입대휴학자의 성적) 해당학기 중간시험을 치른 후, 학기말 시험 전에 입대휴학한 자에 한 하여는 해당학기 휴학일자 이전의 중간시험, 출석, 과제물성적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성적을 인정할 수 있다.

제44조(휴학자의 성적)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과 중간고사 이전에 입대휴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학기 전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45조(자퇴자의 성적) 학기 중 자퇴한 학생의 경우는 당해학기 모든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학기말시험 종료일이 지나서 자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징계받은 자의 성적) ① 학기말시험 종료이전의 행위로 인하여 1개월 이상 해당하는 정학 또는 그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학생의 경우에는 해당 학기 전교과목을 낙제 처리할 수 있다.

② 시험부정행위로 인한 징계처분은 이 규정 제47조에 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규정에 따른다.

제47조(시험 부정행위자의 처벌) 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부정행위의 경중에 따라 해당과목 낙제, 당일과목 낙제, 해당학기 전 과목 낙제, 근신, 정학, 퇴학 등의 징계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시험 부정행위자는 소속대학 교수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대학장이 징계하고, 교무처장에게 통고한다. 근신 이상의 징계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 양정을 결정한다.<개정 2010.11.1>

제47조2(부정행위 구분) 부정행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

1. 타인의 답안지를 훔쳐본 자 및 보여준 자
2. 노트나 교재, 메모, 기타 참고서 등을 훔쳐본 자
3. 타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도록 강요한 자
4. 쌍방이 서로 상의한자
5. 예상문제를 쪽지로 만들어 가지고 있는 자
6. 책상, 책받침 등에 적어 놓은 자
7. 답안지를 바꾸어 본 자 또는 문제지에 메모하여 문제지를 바꾸어 본 자
8. 답안지를 외부에서 작성하여 들여온 자
9. 대리시험을 치른 경우 및 이를 의뢰한 경우
10. 고사장에서 감독자의 지시에 불복하고 반항 또는 항거행위를 한 자
11. 기타 부정행위

제48조(시험 불응 신고) ①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시험 기간 중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시험에 응하지 못하는 자는 “시험불응신고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사유 발생 7일 이내에 학과(부)장을 거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그 사본은 수강과목 담당교수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② 질병에 의한 시험불응신고의 경우에는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③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중간시험을 치른 후 군입대 및 질병으로 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군입대 및 질병 휴학자가 당해 학기 성적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서” 외에 별도의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다음표의 인정사유로 시험불응신고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는 중간시험 또는 학기말 시험 중 응시한 시험의 성적만으로 100%환산 인정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기에 실시한 시험에 1회도 응시하지 않는 과목은 시험불응신고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라도 해당과목 낙제 처리한다.

인정 사유	인정기간	첨부서류
조·부모(외가, 처가포함) 및 배우자 및 자녀의 사망	사망당일을 포함한 7일 이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포함)	동(면)장 확인서 또는 사망진단서 및 가족관계 확인서류
군입대 및 귀향 조치자	입영전일부터 귀향 다음날까지 (다만, 2주이내만 인정)	입영통지서 및 귀향조치사유서 사본
징병검사	검사 전날부터 검사 다음날까지	징병검사 통지서 사본
본인입원	시험기간 중 질병, 사고로 인한 입원(1주 이상 입원, 학기별 1회만 인정)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입원확인서
본대학교에서 파견하는 국내 또는 해외여행(연수)	여행(연수)기간	본대학교해당 부서에서 발행하는 여행(연수)확인서

제49조(학사경고) ① 당해학기의 평균평점이 1.75 미달한자에게는 학사경고를 한다.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 재학생은 학사 운영 규정 II의 규정을 따른다.

② 졸업대상자 중 당해학기 성적취득으로 졸업 또는 수료가 가능한자는 학사경고 적용에서 제외한다.

제50조(학사경고통지) 대학장은 학사경고자 및 학사경고 제적자에 대하여 다음 학기 등록 전에 본인 및 보호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제51조(학사경고 제적) ① 1999학년도 이전 입학생으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받은 자와 2000학년도 이후 입학생으로 연속 3회 및 통산4회를 받은 자는 학사경고 제적처리한다.

②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의 재입학은 학사경고 제적이후 2학기 이상 경과한 자로서 정원의 여석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 학생은 학사 운영 규정 II의 규정을 따른다.

③ 학사경고에 의한 제적자는 재입학 후 제1항의 학사경고 제적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재입학 당해 학기 성적이 1.75미만인 경우에는 퇴학 처분한다.

제52조(취득학점에 따른 수료학년 인정) <삭제 2009.3.1>

제7장 계절학기

제53조(계절학기 운영) ①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방학 기간 중에 개설할 수 있다.

② 1학점 당 강의시간은 총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개설교과목은 교양과목, 전공과목 및 교양학부대학장이 허가한 강좌로 한다. <개정 2012.3.1>

제54조(수강대상) 의과대학 의학부 의학과정을 제외한 각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군입대 휴학생 제외) 중 재수강, 기타의 사유로 추가 학점취득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11.24>

제55조(수강신청)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1. 계절학기 개설 예정과목은 계절학기 개시 15일전까지 공고한다.

2.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3.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1회에 한하여 정정기간을 두며 정정기간 경과 후에는 수강신청 정정을 불허한다.

4. 수강신청을 마치고 수강료를 납부함으로써 계절학기 등록을 필한 것으로 인정한다.

5. <삭제 2011.9.1>

6. 계절학기는 하계 또는 동계 계절제 수업으로 정규학기로는 인정하지 않으며 수강신청 학점은 정규학기의 수강신청학점 상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수업연한의 적용도 받지 않는다.

7. 등록기간 경과 후 수강 취소하는 경우 취소학점만큼 다음 학기에 수강신청을 제한한다.

<신설 2012.11.24.>

제56조(수강료) 계절학기 수강료는 해당학기 등록금을 기준으로 학점당 또는 시간당으로 환산하여 책정하며, 수강료는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7조(계절학기 성적) ①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교과목의 성적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학기 평균평점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② 계절학기 이수 성적은 장학금 지급, 수강학점 제한제도적용, 교직과정선발 등을 위한 정규학기의 성적평점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전체 학년 성적 평점 평균에는 산입한다.

③ 휴학 중인 학생도 계절학기 이수가 가능하다. 단, 휴학 중인 학생이 계절학기 수강으로 졸업학점을 충족하더라도 복학하여 최소한 한 학기는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6.1.>

④ <삭제 2013.09.01.>

제8장 학적변동(휴학, 제적, 퇴학, 복학, 재입학 및 편입학)

제58조(일반휴학) ① 일반휴학이란 군입대 준비, 개인(가정)사정, 질병, 어학연수 등의 사유로 다음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않겠다고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며,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휴학기간 만료 후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휴학을 재신청하여야 한다.

③ 1학년 1학기에 한하여 군입대, 질병 이외의 휴학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전문계 고등학교 졸업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 중 근무지 이동으로 인한 휴학사유 발생자와 외국인 입학자 중 한국어 재교육반 진학예정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9.25.>

④ 질병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가 불가능한 자로서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을 지나 휴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 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질병 :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 :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 <개정 2013.09.01.>

⑤ 학기 중 일반휴학생의 성적은 그 교과목의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보아 본인이 취소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다만, 당해 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질병으로 휴학한 자는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⑥ 일반휴학은 1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의 합계는 6학기(단, 편입학생은 3학기)이내로 한다. 다만, 유급에 의한 휴학은 6개월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12.20., 2013.1.7>

⑦ 일반휴학중인 자가 병역의무로 인하여 입대휴학으로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휴학 기간만료 전에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군입대 휴학신청서를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특별휴학) 특별휴학이란 휴학횟수 및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휴학을 말한다.

① 군입대 휴학 : 병역의무로 인하여 학업에 임할 수 없는 기간의 휴학

가. 군입대 휴학기간 : 의무복무기간

나. 입영취소 또는 연기 등으로 군입대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7일 이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서 군입대 휴학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군입대 휴학 취소일자가 수업일수 4분의 1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일반휴학 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 유급휴학 : 유급으로 인한 휴학. 유급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학사 운영 규정Ⅱ에 따른다

③ 창업휴학 : 통산 4학기 이내 창업으로 인한 휴학으로 창업휴학에 대한 세부사항은 창업 휴학 운영내규에 따른다.

④ 육아휴학(임신,출산,육아) : 통산 4학기 이내 임신, 출산 및 만 8세이하 자녀육아를 위한 휴학

⑤ 특별휴학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학기의 학기말 시험기간 시작 1주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군입대 휴학 : 입영통지서 사본

나. 유급휴학 : 학사 운영 규정Ⅱ에 따름

다. 창업휴학 : 창업 휴학 운영내규에 제시된 서류일체

라. 육아휴학 : 병원진단서(임신,출산), 가족관계증명서(만 8세이하 자녀육아)

⑥ 당해학기 총 수업일수의 2분의1 이상 수업을 받고 시험을 치른 후 특별휴학을 하는 자는 시험불응신고에 의한 학기 이수 또는 등록금 대체 중 택일하여 요청할 수 있다.

[본조 전문 개정 2015.10.7.]

제60조(휴학기간) ① 휴학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휴학기간의 합계는 통산하여 6학기(단 편입생은 3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특별휴학은 휴학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개정 2015.5.28., 2015.10.7.>

② 질병 등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휴학연한은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7.>

제60조의 2(재학연한) ① 각 대학의 재학연한은 재학기간을 포함하여 6년(12학기)을 초과하지 못하며, 건축학부 건축학전공은 7.5년(15학기), 의학부 9년(18학기)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3.1.7.>

② 외국인, 장애인 및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의 재학연한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7.>

③ 편입학생의 재학연한은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3.1.7.>

④ 재입학생의 재학연한은 재입학 후 본 대학교에서 수업하여야 할 연한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13.1.7.>

⑤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1.7.>

제61조(제적) ① 제적은 자퇴, 학사경고 연속 또는 누적, 휴학기간 종료 후 미복학, 미등록으로 인하여 학적을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적한다.

1. 휴학기간 경과 후 사유 없이 복학하지 않는 자

2.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자로서 휴학을 허가받지 않은 자

3. 1999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학사경고를 연속 3회, 2000학년도 이후 입학자로서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 받은 자. 다만,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학사 운영 규정 II의 규정에 따른다.

4. 기타 제적사유에 해당하는 제 규정 위반자

5. 자퇴를 신청하여 허가 받은 자

6. 전문계 고교졸 재직자 특별전형 입학자는 재학 중 본인의 원에 의해 산업체를 퇴직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적처리 된다. 다만, 이직을 위한 구직기간은 퇴직 다음날로부터 8개월에 한해서는 제적처리하지 않는다. <개정 2010.3.1, 2011.5.1.>

7.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소정의 전 과정을 이수하지 못한 자 <신설 2013.1.7.>

제62조(퇴학) ① 퇴학으로 학적을 상실하면 재입학이 불가능하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퇴학 처분한다.

1. 타대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자
2. 학사경고 제적 1년 경과 후 재입학한 자로서 재입학 후 재입학 당해 학기 성적이 1.75 미만인 자 또는 학사경고 제적자
3. 기타 징계에 의한 퇴학사유에 해당하는 자

제63조(복학) ① 일반복학은 일반휴학기간 만료이전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일반복학은 휴학기간(1년)에 관계없이 학기단위(6개월)로 할 수 있다.

③ 군제대 복학은 입대신고를 필한 후 입대했던 자가 군복무를 마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며, 병적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주민등록초본 등)를 학사일정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속대학 교학지원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복무근무자는 예외로 한다.

제64조(재입학) ① 본교 학칙에 의하여 제적된 자 및 자퇴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입학정원에 결원이 있는 경우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1. 학칙 제25조, 제26조 3호, 4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로서 제적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학칙 제26조 5호에 의하여 제적된 자
3. 퇴학자
4. 재입학 심의를 거쳐 허가를 득하지 못한 자

② 재입학은 제적당시 학년, 학기로 허가한다. 소속은 제적당시 소속을 원칙으로 하되 통,폐합으로 인하여 해당 학문단위에 재적생이 없는 경우 통합된 학문단위로 재입학하고, 폐과된 경우 유사한 학문단위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재입학은 3회까지 허가할 수 있으나 학사경고제적자의 재입학은 1회에 한하여 허가한다.

④ 재입학을 원하는 자는 학사일정에 정하는 기간 중 학과를 경유하여 대학 교학지원팀에 재입학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학장은 재입학 신청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재입학 허가를 총장에게 제청한다.

⑥ 학사경고제적자, 징계경력이 있는 자의 재입학 허가는 대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위촉한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재입학심의위원회를 거쳐 대학장이 총장에게 제청한다.

⑦ 재입학심의위원회는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고,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가’ 또는 ‘부’로 결정한다.

[본조 전문 개정 2015.5.28.]

제65조(편입학) ①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적생의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여석이 있을 경우 3학년에 한하여 편입학으로 결원을 보충할 수 있다.

② 편입학은 지원자에게 필기고사, 실기고사, 서류평가, 면접 등을 실시하여 선발한다. 다만, 사범대학으로의 편입학은 면접고사 및 인·적성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사편입학은 4년제 대학 이상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이어야 한다.
- ④ 편입학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입학 모집요강에 따른다.

제9장 졸업

제66조(졸업자격요건) ① 졸업요건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3.3.1.>

1. 교과과정에서 정한 교양과목, 전공기초과목 및 전공과목 등 졸업에 필요한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자. 단, 전공과목은 3학점 이내에서 유사과목으로 대체 인정할 수 있다.
2. 8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또는 4학년 전 과정을 7학기에 이수하고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3. 졸업인정제 인정기준을 통과한 자
4. 복수전공, 전공심화과정,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 중 1이상의 전공을 이수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2009학년도 신입생부터 시행)
5. 학과에서 실시하는 졸업논문, 실험실습보고, 실기발표, 졸업작품 및 졸업종합시험 등을 통과한 자
6. 전 학년 평균평점 2.0이상인 자(2009학년도 신입생 및 2011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시행)
7. ~ 10. <삭제 2013.3.1.>

② 제1항의 졸업요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각 호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13.3.1.>

1.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 : 7학기를 이수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다만, 건축학전공은 9학기를 이수
2. 건축학전공, 건축설계전공 재학생 : 10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또는 5학년 전 과정을 9학기에 이수하고 9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 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
3.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 대상자 : 공과대학의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 및 동학년도 편입입학자 중 공학교육인증의 졸업기준에서 정하는 자로서 공학교육인증 프로그램에서 정한 해당 기준을 만족하는 자.
4. 컴퓨터공학부 재학생 : 전 학년 평균평점 2.2이상이며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2013학년도 신입학생 및 2015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시행)
5. 의학부 재학생 : 1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하고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6. 창의ICT공과대학 재학생 : 전 학년 평균평점 2.2 이상이며 대학의 졸업사정을 통과한 자 <신설 2015.5.28.>

③ 휴학 중인 자는 전항의 졸업요건을 갖추어도 졸업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7조(졸업학점) ①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의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산업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예술대학,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건설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 140학점

2. 건축학전공, 건축설계전공 : 160학점
 3. 약학대학 : 150학점
 4. 의과대학 의학부 : 교과과정에 준함
- ②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의과대학 간호학과 : 140학점
 2. 공과대학, 사범대학, 정경대학, 경영대학, 산업과학대학, 예술대학, 외국어대학, 사회과학대학, 생활과학대학, 음악대학, 건설대학, 체육과학대학, 국악대학, 미디어공연영상대학, 자유전공학부, 공공인재학부, 글로벌지식학부 : 132학점 <개정 2010.3.1.>
 3. 건축학전공, 건축설계전공 : 160학점
 4. 약학대학 : 150학점
 5. 의과대학 의학부 : 교과과정에 준함
- ③ 2011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졸업이수학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사범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경영경제대학, 예술대학, 체육대학 : 132학점
 2. 건축학전공 : 160학점
 3. 약학대학 : 162학점
 4. 의학부 및 간호학과 : 교과과정에 준함 <개정 2011.3.1.>
 5. 컴퓨터공학부 2013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졸업이수학점은 140학점으로 정한다. <개정 2013.1.5.>
 6. 창의ICT공과대학 : 140학점 <신설 2015.5.28.>
 7. 적십자간호대학(2015학년부터) : 132학점 <신설 2015.5.28.>
- ④ 법과대학의 졸업이수학점은 입학년도와 상관없이 132학점으로 한다. <개정 2012.3.1.>
- ⑤ 2004학년도 이전 입학자가 학적변동으로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와 동일학년, 동일학기(차)로 복학,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2005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 기준에 따른다.
- ⑥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의 각 대학 졸업이수학점은 124학점, 다만,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2010학년도 이전) 134학점, 건축학전공 154학점으로 한다.
- ⑦ 교양, 전공기초, 전공 및 자유선택과목의 졸업에 필요한 이수학점은 다음 표와 같다. <개정 2013.1.5., 2015.5.28.>

구분		인문.사회 계열학과 (부)	사범 대학	자연.공학 계열학과(부)	예.체, 의.약계열학 과(부)	법과 대학	비고
교양 교육 과정	1997년~2002년 입학	28	28	28	28	28	최대 62학점까지 이수인정(전공기초 포함)
	2003년~2008년 입학	18	18	18	18	18	최대 52학점까지 이수인정(전공기초 제외)
	2009년 이후입학	24	24	24	24		
	2011년 입학	28	28	28	28		최대 45학점까지 이수, 공과대학 : 24학점
	2012년 이후 입학	26	26	26	26		최대 45학점까지 이수 창의ICT공과대학은 MACH교양 4학점, MACH실습 2학점 추가 이수
전공 교육 과정	1997년~2001년 입학	36	42	45	54	46	약학부, 의학부 및 간호학과는 교과과정에 준함 건축학전공, 건축설계전공 105학점 이상 전공심화과정시행세칙 제2조 2항 졸업에 필요한 이수요구 학점 참조
	2002년 ~2008년 입학 전공심화과정 (최소전공이수학점)	60(36)	63(42)	66(45)	69(54)	57(46)	
	2009년 ~ 2010년 입학 전공심화과정 (최소전공이수학점)	60(36)	63(50)	66(45)	69(54)		
	2011년 이후 입학 (최소전공이수학점)	66(45)	66(50)	66(45)	69(54)		
자유선택 (전공심화과정 이수자)		자율이수					
졸업 학점	2004년 이전입학	140	140	140	140	132	문과대학, 자연과학대학(2010년 이전), 간호학과 : 140학점 건축학전공, 건축설계전공 : 160학점 약학대학 : 150학점(2008년도 이전), 162학점(2011년도 이후 입학자) 의학부는 교과과정에 준함 컴퓨터공학부 : 140학점(2013년도 이후 입학자) 창의ICT공과대학 : 140학점 적십자간호대학(2015학년부터) : 132학점
	2005년 이후입학	132	132	132	132	132	
	2011년 이후 입학	132	132	132	132		

※ 전공이수학점

- 교직과정 설치학과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 동 학년 재입학자중 교직과정 이수자 : 50학점 이상

제68조(졸업논문) ① 졸업논문은 논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험실습보고서, 실기발표, 졸업작품 및 졸업종합시험 등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② 졸업논문 유형 및 제출시기, 절차, 심사기준 등 졸업논문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학장이 따로 정한다.

③ 졸업논문 심사에 불합격하고 다른 졸업자격요건을 구비한 자에게 수료로 인정하고, 논문을 다시 제출하여 합격하였을 때 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학위수여 시기는 논문 제출학기 졸업일로 한다.

④ 복수전공 졸업자의 졸업논문은 복수전공학과(부)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연계전공자 및 학생설계전공자는 졸업논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69조(조기졸업) ① 조기졸업은 각 대학의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로 조기졸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조기졸업 신청자격은 7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 인자로 한다. 다만, 건축학전공 및 건축설계전공은 9학기까지의 열람용 성적평균평점이 4.00 이상인 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석사학위연계과정 합격자의 수업연한 단축은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전공기초과목을

포함한 전공과목 성적 평균평점이 3.30 이상인 자로서 대학원에서 1학기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학사경고를 받은 자와 학칙에 의해 징계를 받은 자는 조기졸업의 대상자가 될 수 없다.

⑤ 약학부, 의학부, 간호학과, 편입학자 및 2006학년도 이전에 하향 전과(부)한 자는 조기졸업을 허가하지 않는다.

제70조(신체검사) ① 재학생은 본 대학교에서 실시하는 정기 신체검사(연1회)에 응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 신체검사 기간이 지나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소요경비를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71조(학적부 기재사항 정정) ① 학적부에는 학생의 신상, 학적변동, 상벌 및 성적 등을 기록한다.

② 학적부와 호적부상의 기재사항이 상이하야 정정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된 서류를 첨부하여 개인 신상 정정원을 교무처 학사팀에 제출, 허가를 받아 기재사항을 변경한다.

1. 개명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등·초본

3. 생년월일 :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4. 기타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학적부 기재사항을 변경 등재할 경우에는 신·구 사항을 병기한다.

제72조(학칙적용)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내규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내규는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내규는 199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시행일) 이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③ (경과조치) 계절학기(제4장 3-가)에 관한 사항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경과조치) 학적변동(제5장 3-가-6)에 관한 사항은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 내규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학사에 관한 내규를 전부변경방식으로 개정한다.(2008.02.29.)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 제66조 제1항 및 제9호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신입생 및 2010학년도 이전 편입학생은 졸업 까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단 제66조 제1항 제6호의 적용은 2009학년도 신입생부터이며 2008학년도 이전 신(편)입생은 졸업 까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③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⑤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0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에도 불구하고 2008학년도 이전 약학대학 입학생은 변경 전

학칙을 따른다.

- ③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④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세칙 시행 당시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 중이거나 자퇴 등으로 인해 제적 중인 학생의 졸업이수학점은 이 개정세칙에 따른다.
- ③ (경과조치) 법과대학 법학과에 재적 중이나 제적 중인 학생이 이 학칙시행일 이전에 학칙에 따른 졸업요건을 충족한 경우 최소한 한 학기 이상을 이수하여야 졸업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2.11.24.>

(시행일)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1.7.>

- ① (시행일) 이 개정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 제58조 제6항, 제60조 제1항 및 제2항, 제60조의 2는 2013학년도 신입학생, 동 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 ③ (경과조치) 이 개정시행세칙 제66조 제1항 제10호, 제67조 제3항 제5호는 2013학년도 신입학생, 동 학년도 편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다만, 2012학년도 이전 입학생은 변경 전 시행세칙에 따른다.

부칙 <개정 2013.3.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1.>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9.25.>

이 개정 시행세칙 제58조 3항은 2013년 9월 1일 입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4.3.10.>

직제 개편에 따른 이 개정 시행세칙은 2014년 1월 15일부터 적용한 것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15.2.19.>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5.28.>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0.7.>

① (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중 제59조 제4항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개정 2015.12.24.>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